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점 토 보고

의 안 번 호 2611

2021.9.8.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

1. 제안경위

○ 2021. 8. 11. 장상기 의원 1인 발의 (2021. 8. 18. 회부)

2. 제안이유

○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개별 운영 중인 정비사업관리시스템(클린업, e조합, 분담금 프로그램)을 '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'으로 통합 구축·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정비사업시스템, 정비사업 e-조합 시스템 등의 용어를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통일하고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명 확히 함(안 제69조)

4. 검토의견

○ 이 개정조례안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(이하 '도시정비법') 제119조¹)에 따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

¹⁾ 제119조(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) ① 시·도지사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조례로 정한다.

서울시가 운영해오던 3개의 정비사업 관련시스템을 '정비사업 종 합정보관리시스템'(이하 '종합정보관리시스템')으로 통합 구축하게 됨 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화경정비 조례」(이하 '조례') 상 해당 용어를 정비하고자 장상기 의원이 발의하여 2021.8.18.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- 「도시정비법」제119조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'클리업시스템 ('10.1월 시행)'과 '분담금 추정 프로그램('10.3월 시행)'. 'e-조합 시스템('17.12월 시행)' 등 총 3가지의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운영 해 왔음.
 - 그간 관련 시스템이 3개로 분리 운영되는 과정에서 기능의 중복.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사용자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. 서울 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('20.3.5. 착수) 지난 8월 31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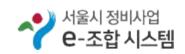
현행 시스템



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 제80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료 구축 및 정보 제공 (`10.1 시행)

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

분담금 추산액 등 정보 제공 (10.3 시행)



예산·회계와 행정업무 등 처 리 및 관련 정보 제공 (`17.12 시행)



통합 시스템 (`21.8.31 시행)

⁴️서울특별시

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

○ 이에 따라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 상 기존의 시스템 명칭을 '**종합정** 보관리시스템'으로 통일2)하고, 각 시스템에 대한 설명(제69조제1

²⁾ 제15조제6항·제9항. 제24조제1항. 제69조제2항·제4~6항. 제70조제1항. 제85조

항)은 통합시스템의 세부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하는 등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, 특이사항은 없음.

현 행	개 정 안
제69조(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) ① 시장은 법 119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효	제69조(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등)
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<u>위하여 다음 각</u> 호의 정비사업관리시스템(이하 "정비사업 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한다.	
1. 클린업시스템 :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 한 자료 구축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	1. 정보공개 :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를 제공
2.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: 제80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	2. 조합업무지원 : 추진위원회·조합의 예산· 회계와 정보공개 등록 및 행정 업무 등 처 리
3. 정비사업 e-조합 시스템 : 예산·회계와 행정업무 등 처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한 시스템	3.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: 제80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 정보를 제공

담 당 자	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윤 은 정
연 락 처	02-2180-8208
이 메일	urbanth@seoul.go.kr

【붙임】관련 규정

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- 제119조(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) ① 시·도지사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조례로 정한다.

제124조(관련 자료의 공개 등)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(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,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)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,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 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- 1.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
- 2. 설계자 시공자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
- 3.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
- 4. 사업시행계획서
- 5. 관리처분계획서
- 6.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
- 7. 회계감사보고서
- 8. 월별 자금의 입금•출금 세부내역
- 9. 결산보고서
- 10.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
- 11.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
-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, 개략적인 내용, 공개장소, 열람·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 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・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- ④ 조합원,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·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1. 토지등소유자 명부
- 2. 조합원 명부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
-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. 이 경우 비용

납부의 방법,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조례로 정한다.

⑥ 제4항에 따라 열람·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·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○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

- 제69조(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) ① 시장은 법 119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사업관리시스템(이하 "정비사업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한다.
- 1. 클린업시스템 :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
- 2.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: 제80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
- 3. 정비사업 e-조합 시스템 : 예산·회계와 행정업무 등 처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비사업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의 활용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시스템에 구축된 정비구역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·감독· 지원하여야 한다.
- ④ 법 제124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(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말한다)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하여야한다.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있다.
- ⑤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(조합의 청산인을 포함한다)은 정비사업 e-조합 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·회계관리 및 문서 등의 작성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.
- ⑥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비사업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31.>
- 제80조(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) ①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 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, 토지등소 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비의 내용 과 부합하게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.
- ③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"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·도조례로 정하는 사항"과 영 제32조제2호에서 "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·도조례로 정하는 정보"란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정보를 말한다.